

# 외국의 상속회복제도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II)

## - 오스트리아 · 일본 -

### I. 오스트리아법

#### 1. 개요

오스트리아민법(ABGB)은 제823조와 제824조<sup>1)</sup> 두 개의 조항으로 상속회복의 소(Erbschaftskalg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소는 상속인의 상속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sup>2)</sup> 그것은 상속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상속회복의 ‘소’를 규정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는 일응 재판상으로부터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상속회복과 관련하여 재판 외에서 특약을 할 수 있다.<sup>3)</sup> 그 소는 개별적 소와는 달

리 포괄적·집합적 소이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은 물론 상속재산의 매수인과 이들의 상속인을 포함한다.<sup>4)</sup> 이처럼 상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매도인과 동일시되므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에 관한 제824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sup>5)</sup>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물반환의 소로 회복하여야 한다(제823조 2문).<sup>6)</sup> 상속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점에서 스위스법과 같고 독일법과 다르다. 상대방의 반환의 범위는 그의 선·악의에 따라 달라

#### 각주

- 1) 이하의 오스트리아법에 관한 서술 중 법률명 없이 인용된 조문은 오스트리아민법(ABGB)의 그것이다.
- 2)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3. Aufl., 2006, § 823 Rn. 1.
- 3) Ferrari, in Ferrari/Likar-Peer (Hrsg.), Erbrecht, 2007, S. 492는 이것이 통설이라고 하며, 아울러 판례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Ferrari, a.a.O., S. 494; Welser, in Rummel, ABGB I, 3. Aufl., 2000, §§ 823, 824 Rn. 10;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3 Rn. 6.
- 5) Welser, in Rummel, ABGB I, §§ 823, 824 Rn. 19.
- 6) Ferrari, a.a.O., S. 494.

진다(제824조 제1문, 제329조 이하). 다만 상속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제1041조)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묻지 않는다.<sup>7)</sup>

## 2. 전득자의 보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개개의 재산으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제824조 제2문). 이는 일종의 선의취득에 해당한다.<sup>8)</sup> 이 때 상속재산이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혹은 그 취득이 유상행위에 기한 것인가 무상행위에 기한 것인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통설).<sup>9)</sup> 선의의 전득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만, 그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에 한한다.<sup>10)</sup>

전득자가 과실에 기하여 참칭상속인의 처분

권 없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가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지 않는다.<sup>11)</sup> 이것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므로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에 기한 것이다. 선의는 의무부담행위시점이 아니라 처분행위시점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시점이 아니라 등기시점의 선의이어야 한다.<sup>12)</sup>

## 3. 상속회복소권의 행사기간의 성질과 개별적 소와의 경합 여부

상속권 그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30년 및 4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제1478조, 제1479조), 그 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기산된다.<sup>13)</sup> 개별적 소와 상속회복의 소는 경합하므로,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sup>14)</sup>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에 기

### 각주

7) OGH 26. 4. 2006, 3 Ob 219/05k; Ferrari, a.a.O., S. 492.

8)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4 Rn. 4.

9) Eccher, Bürgerliches Recht VI Erbrecht, 2. Aufl., 2002, Rn. 6/38;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4 Rn. 4; Koziol/Welser, Bürgerliches Recht II, 13. Aufl., 2007, S. 585; Welser, in Rummel, ABGB I, §§ 823, 824 Rn. 30; Ferrari, a.a.O., S. 496과 그곳에 소개된 증명자료 참조.

10)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4 Rn. 5.

11)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4 Rn. 6; Koziol/Welser, a.a.O., S. 585와 이들에 소개된 증명자료 참조.

12) Eccher, in Schwimann, ABGB III, § 824 Rn. 7.

13) OGH NZ 1999, 167; Koziol/Welser, a.a.O., S. 584; Welser, in Rummel, ABGB I, §§ 823, 824 Rn. 25; Ferrari, a.a.O., S. 497.

14) Koziol/Welser, a.a.O., S. 583 f.

한 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sup>15)</sup> 상속회복의 소가 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소유권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의 소멸시효기간이 30·40년의 장기이므로 그리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 II. 일본법

### 1.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취지

일본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율방식과 내용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흡사하다. 일본민법은 단 하나의 조항, 즉 제884조에서 상속청구권의 행사기간제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그곳의 최고재판소는 한편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민법 제884조가 상속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고,<sup>16)</sup> 이것은 우리 민법학에서

의 지배적인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2. 연혁

1898년의 일본민법(이하 ‘명치민법’이라고 한다)은 제966조에서 “家督相續回復의 청구권은 가독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sup>17)</sup> 이것을 유산상속에 준용하고 있었다(제993조).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초를 담당하였던 穂積陳重<sup>1</sup> 위원은 5년의 단기간을 마련한 이유에 관하여 “가족상속 등의 문제는 가급적 조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그 家의 조직상의 연장선에 있는 제3자의 이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인이 … 특히 단기간에 그 권리를 주장하여 진정한 호주권의 소재를 확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sup>18)</sup>

그로써 명치민법의 상속회복제도는 서구의 법질서와 비교할 때 단순히 시효기간이 단축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

#### 각주

- 15) Klang/Klang, Kommentar zum ABGB, VI: §§ 1293-1502, 2. Aufl., 1951, § 1479 Anm. B 1 (S. 606); Bydlinski in Rummel, ABGB II/3, 3. Aufl., 2000, § 1459 Rn. 1, § 1479 Rn. 1 f., § 1481 Rn. 2; Mader, in Schwimann, ABGB VII, 2. Aufl., 1997, § 1479 Rn. 2.
- 16) 日最判 昭和53(1978).12.20. 大法廷 判決, 民集 32권 9호, 1674쪽.
- 17) 이와 같은 신분상속제도는 서구의 근대상속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민법 특유의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에 모델이 되었다.
- 18) 이에 관하여는 前田泰, “相續回復請求權の長期消滅規定と除斥期間”, 椿壽夫/三林宏 編·著, 權利消滅期間の研究, 2006, 262~263쪽과 그곳에 소개된 입법관계자료 참조.

있고, 로마법 이래의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다른 제도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9)</sup> 한편 20년의 장기기간은 穂積2 위원에 의하면, 상속권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의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sup>20)</sup> 결국 명치민법 제966조의 단기기간(5년)의 입법취지는 호주권의 조속한 확정에 있는 반면, 장기기간(20년)은 상속인의 보호, 즉 상속인의 권리실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명치민법 제966조를 유산상속회복청구권에 준용한 명치민법 제993조에 관하여는 기초과정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고, 단지 제966조와의 整合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sup>21)</sup> 분명한 것은, 명치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중점이 신분상속에 있었고, 재산상속은 부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는 점이다.<sup>22)</sup> 이러한 명치민법의 규율에 대하여는 “가독상속은 家の 질서에 관한 것이므로 상속의 다툼(호주권의 귀속)을 조기에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유산상속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검토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채 가독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sup>23)</sup>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민법이 개정(1947년)되면서 가독상속의 폐지에 따라 명치민법 제966조도 폐지되었고, 그로써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현행 민법 제884조는 명치민법 제966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즉 현행 민법은 제884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의 입법자는 제884조를 입안함에 있어서 명치민법의 내용을 답습하였는데, 그것은 입법자의 어떤 확신에 기한 결단에 기해서가 아니라 민법개정을 서두르다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sup>24)</sup> 그래서 명치민법상의 호

## 각주

- 19) 内田貴, 民法 IV 親族·相續, 補訂版, 2004, 435쪽. 新版 注釋民法(26)/泉久雄, 1992, 121쪽. 일본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이 청구권이 표현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 20) 前田泰, “相續回復請求權(民法八八四條)”, 椿壽夫/三林宏 編·著, 權利消滅期間の研究, 2006, 493면과 그곳에 소개된 입법관계자료 참조.
- 21) 副田隆重, “民法八八四條(相續回復請求權)”, 廣中俊雄/星野英一 編, 民法典の百年 IV, 1998, 168쪽.
- 22) 島律一郎/松川正毅 編, 基本法 コメントール 相續, 제4판, 2001, 22쪽 (右近健男 집필부분).
- 23) 高木多喜男, “共同相続人の一人による相続権侵害に対する他の相続人の排除請求と民法八八四條 — 最高裁昭和53年12月20日大法廷判決”, 判例タイムズ 390호, 191쪽.
- 24) 内田貴, 앞의 책, 435쪽; 副田隆重, 앞의 논문, 170면; 前田泰, 앞의 글, 264쪽.

주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이 현행 민법의 재산상속제도 아래서도 유지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sup>25)</sup>

###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은 다양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특별한 청구권이라는 독립권리설,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집합권리설이 전통적으로 널리 제창되고 있다.<sup>26)</sup> 이 두 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독립권리설은 이를 긍정하지만, 집합권리설은 이를 부정한다. 판례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sup>27)</sup>

### 4.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공동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

나, 판례는 공동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sup>28)</sup> 그러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최고재판소의 전신인 大審院은 가독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으로 한정하면서, 제3자의 피고적격을 부정하였다.<sup>29)</sup>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학설과 하급심 판결례 중에 전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증가하였다.<sup>30)</sup>

그러한 와중에 「最高裁判所 平成 7(1995).12.5. 判決」<sup>31)</sup>은 유산 중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멋대로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특정승계인은 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참칭상속인이 선의·무과실이어서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승계인도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전득자도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sup>32)</sup>

#### 각주

- 25) 潮見佳男, 相續法, 제2판, 2005, 305쪽.
- 26) 이에 관하여는 右近健男, 앞의 글, 22쪽 이하.
- 27) 新版 注釋民法(26)/泉久雄, 89~90쪽.
- 28) 日最判(大法廷) 昭和 53(1978).12.20, 民集 32권 9호, 1674쪽.
- 29) 日大判 大正 5(1916).2.8. 民錄 22輯, 267쪽; 右近健男, 앞의 글, 25쪽.
- 30) 新版 注釋民法(26)/泉久雄, 114면; 副田隆重, 앞의 논문, 183~184쪽과 이들 문헌에 소개된 판례 참조.
- 31) 家庭裁判月報 48권 7호, 52쪽.
- 32) 副田隆重, 앞의 논문, 184쪽; 右近健男, 앞의 글, 25쪽; 潮見佳男, 앞의 책, 314쪽.

대개의 학설도 전득자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884조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sup>33)</sup> 그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5년의 시효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새기게 되면, 제884조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4)</sup>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 침해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국한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악의·유과실의 참칭상속인 및 전득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그 결과 제88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나,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상속인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시효의 정지나 중단에 관한 규정은 그 모두가 명치민법 제966조의 5년·20년의 기간에 공히 적용된다는 기초자의 언급으로부터 위 기간의 성질은 소멸시효로 예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5)</sup> 판례도 명치민법은 물론 현행 민법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인 5년·20년을 시종일관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있다.<sup>37)</sup> 학설상으로는 초기에는 시효설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거기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후 2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이해하는 학설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더니, 민법개정(1947) 후에는 통설이 되었다.<sup>38)</sup>

### III. 결론에 갈음하여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법에서의 상속회복제도는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통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에 조력하는 것을 본래적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제도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개별적 청구권에는

#### 각주

33) 右近健男, 앞의 글, 25쪽.

34) 我妻榮/有泉亨/遠藤浩/川井健, 앞의 책, 324-325면; 新版 注釋民法(26)/泉久雄, 114~115쪽.

35) 日最判(大法廷) 昭和 53(1978).12.20, 民集 32권 9호, 1674쪽; 日最判 平成 11(1999).7.19, 民集 53권 6호, 1138쪽.

36) 前田泰, 앞의 글, 263쪽 참조.

37) 前田泰, 앞의 글, 264~265쪽과 그곳에 소개된 판례 참조.

38) 右近健男, 앞의 글, 26쪽; 前田泰, 앞의 글, 267쪽.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특전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민법이 개별적 청구권(또는 소)과는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또는 상속회복의 소)을 도입한 것은 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들 법제에서는 선의의 참칭상속인의 보호가 상속회복제도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있으나, 거래의 안전이 상속회복제도의 목적으로 거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의 명치민법은 대륙법계의 다른 법질서와는 달리 재산상속 외에도 신분상속을 도입하였고, 이 때 호주권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도입하면서 이를 재산상속에 준용토록 하였는데, 현행 일본민법은 신분상속을 폐지하였으면서도 단기소멸시효는 명치민법을 답습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상속회복제도에 20년의 장기권리행사기간으로 상징되는 ‘상속인의 보호’라고 하는 연혁적 취지 외에 5년의 단기권리행사기간으로 상징되는 ‘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취지가 가미되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다만 그곳의 최고재판소는 약의 또는 과실 있는 참칭상속인과 그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시효원용권을 부정함으로써 ‘상속인의 보호’라고 하는 상속회복제도의 본

원적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그리고 보면 상속회복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거래관계의 조기안정” 즉 “거래의 안전”에서 찾는 경우는 우리 민법학이 유일한 것 같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3·10년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 =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제도’로 기능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속회복제도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하면서,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 제도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만들었다.<sup>39)</sup>

민법 제999조를 단순히 입법자의 범정책적 결단의 소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상속회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진다(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수의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생각해 보라).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상속회복제도가 상속인과 거래안전 사이의 이익형량에 실패한 제도는 아닌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오스트리아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심지어 40년인 경우도 있다. 한편 스위

각주

39) 윤진수, 앞의 논문, 206쪽. 이 논문은 “결국 입법론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는 독립된 포괄적 청구권으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버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스는 참칭상속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1·10년의 이중기간을, 악의인 경우에는 30년의 단일기간을 적용하지만,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소유권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널리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5·2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보다 권리행사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참칭상속인과 전득자에 대하여는 시효원용권을 봉쇄함으로써 상속인의 보호가 우리보다 한층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회복기간을 3·10년으로 하고 있는데(제999조), 이 가운데 특히 3년의 기간은 신분상속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한 명치민법 제966조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신분상속관계가 폐지된 오늘날 재산상속회복을 3년의 단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할 때에도 짧지만, 판례처럼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상속인의 보호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상속회복제도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은 그 대부분이 권리행사기간의 단기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도의 연혁이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

이 상속인의 상속회복에 조력하는 제도임을 알려주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서는 그 행사기간의 단기성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다. 물론 일국의 입법자는 외국의 법제도를 계수함에 있어서 사정에 따라 그 제도의 요건이나 효과에 다소의 변화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속회복제도처럼 권리행사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 자체가 뒤바뀌는 경우(상속회복제도가 아닌 상속회복저지제도)에는 그 입법의 타당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과연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서도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도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현재보다 장기로 개정하는 길 외에는 없어 보인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